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1회 임시회

검토 보고서

2023. 4. 3.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3. 17.
- 회부일 : 2023. 3. 22. (의안번호 : 23-29)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전문가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 정책 심의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(보육정책위원회 구성)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제1항 마포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변경함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(보육정책위원회 구성)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'23. 2. 9 ~ '23. 3. 2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전문가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정책 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안 제5조 제1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 위원 수 확대 및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.
- 다만, 상위법인 「영유아 보육법시행령」 제6조 제1항이 2021년 12월 7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,
- 위원 위촉 시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 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성별을 고려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· ③ · ④(생략)</p>	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· ③ · ④(현행 제2항,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5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박신영
연 락 처	02-3153-8905

참고자료

1. 관련법령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. 1.] [대통령령 제32686호, 2022. 6. 7., 타법개정]
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①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개정 2010. 3. 15., 2012. 6. 29., 2021. 3. 2., 2021. 12. 7.>

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>

1. 법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2.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

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「법」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0. 3. 15., 2011. 12. 8., 2012. 6. 29.>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

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

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

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[전문개정 2009. 6. 30.]

양성평등기본법

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9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직 목표제”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.>

1. 직종·직급·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

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

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

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

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.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

(2023. 3.)

년도	2021	2022	2023
개최횟수	4회	4회	2회

3.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

(임기: 2021. 5. 1. ~ 2023. 4. 30.)

연번	구분	성명	현 직
1	관계공무원	이인숙	복지동행국장
2	보호자대표	김근영	구립어린이집 학부모
3		신수정	구립어린이집 학부모
4		김수경	협동어린이집 학부모
5		김종헌	민간어린이집 학부모
6		공익 대표	조흥연
7	이경희		마포구 약사회 부회장
8	이준희		(사)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이사
9	이희수		망원청소년문화센터 관장
10	보육전문가	장혜진	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 국장
11		김지현	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
12	어린이집 원장	김수미	구립어린이집 원장
13	보육교사 대표	김재광	구립어린이집 원감

※ 임기 2년(1회 연임 가능)